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모집 공고

고교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고교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의 운영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대학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I.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모집 공고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선정 규모	▲ 전체 3개교 내외 *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규모 변동 가능
선정 방향	▲ 수도권·비수도권 특성화고 등 고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 선발
신청 자격	▲ '25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지원을 받는^① 대학^② ① ▲ 2025년 이전 선정되어 '25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5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외) 보건의료 계열 학과 재학생 수가 2/3 이상인 대학,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사업 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 '26.2월
지원내용	▲ 사업 운영비 2.8억원 - 컨설턴트 인건비 +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2.5억원, - 기타 운영경비 0.3억원
접수기한 접수방법	▲ '25. 3. 14.(금) 17:00까지 구비서류 제출 * 선정심사(본부)→우선협상대학 발표(3월 중)
제 출 처	▲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

II.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모집 공고 주요 내용

- (목 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하여 고교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고졸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등

- (선정규모) 전체 3개교 내외(변동 가능)

* 수도권-비수도권, 특성화고 등 고교의 지역별 분포,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균형 선발하되,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에 따라 조정 예정

- (사업내용) 취업 희망 고교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진로탐색·상담) 고교 재학생이 진로·경력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AI 기반 직업·진로탐색 서비스와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진로·직업 체험 기회 제공

* 기업 현장 직무 체험, 현직자 멘토링, 집단상담 등

- 직업훈련* 희망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전 1:1 진로상담 지원

* 직업계고(도제학교,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및 일반고 비진학청년(특화훈련)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희망직업에 대한 취업활동계획서(IAP) 수립, 이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일경험 연계 및 취업스킬 제고*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既 실시하고 있는 구인기업 정보제공,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가능(모의 면접·피드백, 이력서 클리닉, 구인기업 정보제공, 채용박람회 연계 등)

- (사후 관리) 참여 학생이 직업훈련 및 졸업 후에도 미취업 상담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속 지원*

* 직업·진로상담,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청년도전지원사업' 등과 연계 지원

- (신청 자격) '25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국고 지원을 받는^① 대학^②

- ① ▲ 2024년 이전 선정되어 '25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대학
▲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운영하는 대학('25년 신규 진입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동시 신청 필요)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 (제외) 보건의료 계열 학과 재학생 수가 2/3 이상인 대학,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저조로 사업 운영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 **(신청제외 대상)** ① 공고일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② '25년 학자금 지원제한대학 ③ '22년 이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 저조로 사업 중단 이력이 있는 대학

* 보건의료계열: 의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치기공학과, 보건행정학과 등

□ **(사업 방식)** 대학(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 프로그램 수행

○ 2개 이상 대학의 공동 운영(컨소시엄) 불가

○ 대학은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대학이 해당 민간기관에 사업을 재위탁하는 턴키 방식의 운영은 불가

- 해당 민간전문기관은 다음의 자격을 갖출 것

◆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민간전문기관 대표자(법인 임원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신청일 기준)
-

□ **(지원 내용)** 사업비 지원(대학당 2.8억원, 100% 국고지원)

○ 프로그램 참여 인원 500명 목표

- 컨설턴트 등 인건비 +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2.5억원,
기타 운영경비 0.3억원

□ **(선정 기준)** ▲ 진로·취업지원 인프라(30점) ▲ 고용서비스 제공 계획(55점) ▲ 참여 학교 모집 및 홍보계획(15점) 등을 종합하여 선정

□ (사업 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6년 2월

○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단년도 지원

※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24년 현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이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본 공고)」에 선정되었으나 이후 '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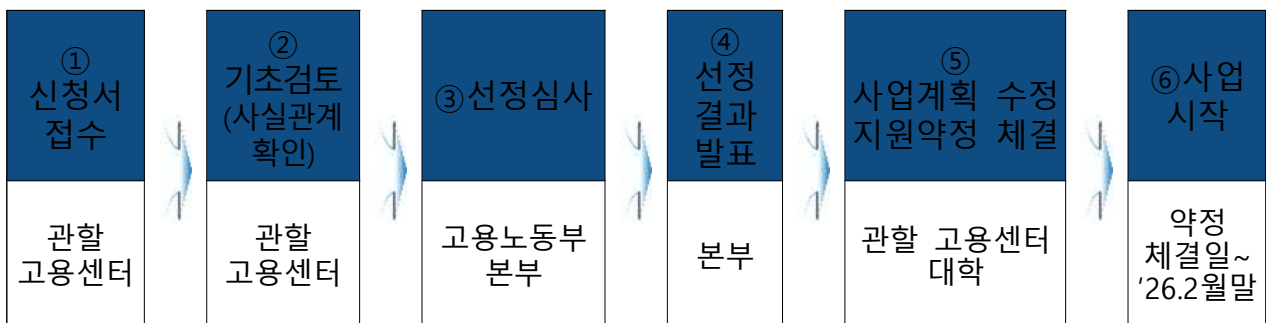
□ (신청 기한·접수) '25. 3. 14.(금) 17:00까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에 공문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편철 후 대학별 10부 제출(파일은 USB 또는 e-mail로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시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서식 1)
- ②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서식 2, 해당하는 경우)
- ③ 사업계획서(서식 3)
- ④ 민간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심사절차·일정) 기초검토 및 1~2차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학 발표



- ①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25.3.14(금) 17:00 도착분까지)
- ② 관할 고용센터는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필요 시 현장실사)
- ③ 선정 심사: 사업계획 등 심사

* 사업별 심사 최저기준(가점 제외 100점 중 70점) 통과 시에 한함

⑤ 우선협상대학 발표('25. 3.31일 잠정, 변동 가능)

⑥ 우선협상대학과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계획 조정하여 약정 체결

※ 일정 변동 가능

<붙임1>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추진방향

<붙임2>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선정기준

<붙임3>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예산 활용범위

<붙임4> 관련 서식

고교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고졸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고교생 진로·직업탐색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1단계 진로·직업탐색

- AI기반 직업탐색 및 심층상담
- 개인별 희망직업 포트폴리오
- 취업활동계획서 수립

2단계 취업역량 제고

A형

(취업 실전 스킬 향상)

- AI면접 컨설팅, 멘토링 등 맞춤형 서비스

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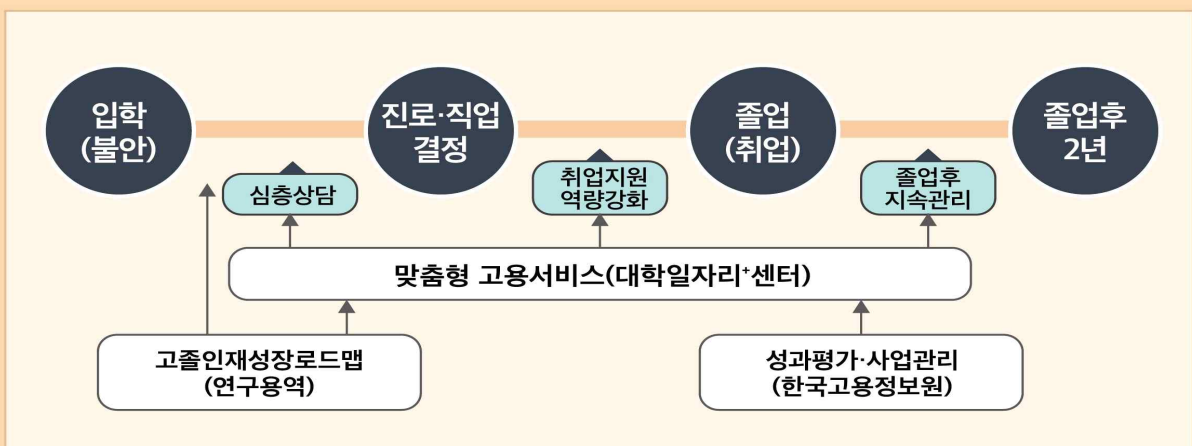
(직무역량 향상)

- 관찰은 일경험
- 직업훈련 등

전달
체계

청년 대표 취업지원 전달체계인 대학일자리+센터 활용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흐름도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진로·취업 지원체계 · 인프라 구축 (30)	인력 (10)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배치 계획(5) • 신규 인력 채용 및 활용 방안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절한가? •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존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의 활용, 재배치, 업무 분장 등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절한가? • 장기적인 직원 근로여건 개선 방안이 수립되었는가? • 업무 과중 방지, 직원 복지 개선사항 계획 등 포함 ▪ 인력 활용 및 역량강화 방안(5) • 잡케어 등 직업진로 탐색 서비스 결과 해석 및 관련 기초상담 수행을 위한 인력 활용방안 역량강화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진로·취업 심층상담 수행 및 1:1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 활용방안 및 역량강화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기존 유사 사업 성과 (5)	▪ 유사 정부지원사업 수행 역량(5) • 진로·취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최근 3년간) • 유사사업 참여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거나 수상경력이 있는가?
	산학협력 체계 구축 정도(15)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정도 및 그간 성과(15) • 인근 고교 및 기업 등과 산학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 인근 고교 대상 진로상담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성과가 있었는가? • 대플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중 인근 고교 대상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성과가 있는가?
서비스 제공 계획 (55)	직업진로 탐색·상담 계획 등 (15)	▪ 직업진로 탐색 및 상담(10) • 고교생에게 조기에 직업 정보와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잡케어 프로그램 등 AI기반 직업정보 제공 및 기초상담 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AI기반 진로·직업정보 제공 서비스(잡케어) 수행 계획은 수행 지원과 결과 해석, 기초상담 제공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는가? • 고교생이 잡케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타 진로심리검사 실시) 기초상담 및 심층상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 희망직업 포트폴리오 수행계획(5) • 개인별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 구성 및 수립 지원방안은 고교생이 희망 취업경로와 필요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 개인별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단기체험 프로그램,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 수행·연계 방안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취업활동계획서 수립 지원계획 (25)	▪ 취업활동계획서 수립 지원계획 (10) • 참여자들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관리(진행상황 등)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잡케어 등 - 상담 - IAP 수립의 연계방안 • 취업스킬 향상 프로그램(모의 면접·피드백, 이력서 클리닉 등) 및 취업 정보제공(구인기업 정보제공, 채용박람회 연계 등) 방안은 적정한가? ▪ 직업훈련·일경험 등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방안(15점) • 참여자 IAP에 따라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고교 일학습병행(도제 학교),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일반고 특화훈련 안내·연계, 지역 내 직업훈련 기관과의 연계 등 수행방안 • 참여자 일경험 연계를 위한 학내 현장실습센터, 지역 기업 네트워크, 고용노동부 타 정책 등의 활용 방안 *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현장 직무체험(자체 프로그램), 미래 내일 일경험 연계(고용부 사업)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기존프로그램과의 연계(10) • 고교생 대상 자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적정한가? • 기업현장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대학이 고교생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 기존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기존 프로그램과 잘 연계되어 실효성이 있는가?
	사후관리 계획 (5)	• 사후관리 추진계획(5) • 상담, 일경험·직업훈련 연계, 취업연계 등 2년 사후관리 추진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모집·홍보 계획 (15)	모집·홍보 계획 (15)	▪ 참여학교(생) 모집 및 홍보 계획 (15) • 인근 직업계고 등 고교의 사업 참여를 위한 모집 계획이 적정한가? • 시도교육청 협조, 고교와 MOU 체결, 설명회 등 학교(생)의 참여 제고 방안 등 • 보다 많은 학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가점 (4점)	-	▪ 최근 3년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평가 결과 (최대 3) ▪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1)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사업비 총 2.8억원(100% 국고 지원)

- 인건비 +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2.5억원, 기타 운영경비 0.3억원

구 분	세부 활용가능 내역(예시)
인건비	○ 전문컨설턴트 및 행정전담인력 인건비(법정 수당 등 포함)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청년 진로·직업 상담 인력 채용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관련 행정 지원·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 ※ 전문 컨설턴트 및 행정 전담·보조인력 등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하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력의 인건비로 지출 불가 * ①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인력 ②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를 포함하여 청년취업지원 업무(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 ③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대학 내 기타 업무(청년취업지원 외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은 포함하지 않음 - 운영대학은 사업주 사회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책정 가능하나 인건비 항목과는 별도 구분하여 예산 책정(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 또는 매월 적립 가능) ※ 퇴직금 적립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컨설턴트 계약기간에 대하여 인정하며, 법정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기 전 퇴사하는 등 적립금 미집행 사유 발생 시 환수(고용센터는 매년 점검 및 정산 시 퇴직 적립금 정상 적립·집행 확인) - 인건비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 가능 ※ 다만, 사업 종료에 도래한 때 예산 소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불가하며, 연초 예산집행계획 수립 시 별도 기준을 정하여 계획을 세운 경우 가능 ※ 교수강사 등 기존 교비로 지급되던 교원의 급여 및 수당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본 사업비로 대체할 수 없으나, 교수강사·컨설턴트 등이 근무시간 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관련 특강 등을 진행하는 경우 특강료 지급 가능(이 경우 지급 기준 명시하여 고용센터에 사후 보고) ※ 컨설턴트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취업처 관리, 특강 등 이유로 형식적인 교수 직함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본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로 인정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증빙 제출 필요),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교원의 급여 및 수당은 사업비로 대체할 수 없음

구 분	세부 활용가능 내역(예시)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 기초상담 및 심층상담 제공 및 체계 구축에 따른 각종 경비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관련 학내 취업 지원 전산망 개선 비용* * 학내 취업지원 전산망의 일반적인 구축유지보수 비용을 의미하지 않으며, 현재 취업지원 전산망을 본 사업에 맞게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교재비, 운영 실비 ○ 컨설턴트 등 역량강화 교육 ○ 상담·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시설 단기 임차 - 원활한 상담을 위한 시설·장비 임차(사업기간 내에 한함) * 본 사업 내에서 청년 진로취업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것에 한함 ○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대학 간 네트워크 활동비 - 기본위탁비 총액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행사에 한함 ○ 사업·프로그램 홍보비 - 기본위탁비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에 한함
운영 경비 ▲ 30백만원	○ 운영경비, 소모품비 등 - 사무용품 구입, 출장비, 위원수당 지급, 기타 운영경비 등 ※ 운영경비 사용가능 내역(예시)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 관련 간담회·업무협의·행사·취업처 발굴 등 소요되는 식대·다과비용 등(업무추진비) ▲ 컨소시엄 기관의 소속 컨설턴트 채용·관리, 센터 운영 관련 간담회·회의·출장비 등 관리비용(민간컨소시엄 기관 관리비) ▲ 각종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 비품 등의 수선·수리비용 ▲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개별 구입 단가 50만원 미만 소모성 구입물품 (웹카메라·마이크 등) ▲ 센터 업무 관련 간담회·행사 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우편·택배비용 등 ▲ 대학 소속 교직원·컨설턴트(컨소시엄기관 컨설턴트 포함), 취업지원 전담자 출장비(동 사업 및 센터 업무와 관련된 출장의 경우에 한함)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회의 등에 참석한 외부위수당 지급(대학 내부 교직원에 대해서는 회의 수당 지급 불가) ▲ 기타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 등과 관련한 비용 등 (대학별 연간 총 200만원 이내) ○ 업무추진비 - 회의, 행사 등의 관련 식대 및 다과 비용 등 - 운영경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민간 컨소시엄 기관 운영·관리비 - 소속 컨설턴트의 채용·관리, 센터 운영과 관련한 회의 실비 등

붙임3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교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79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124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서식1】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참여 신청서(관련사업 수행실적 포함)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운영 신청서

기 관 현 황	대 학 명			
	대학 주소			
	대표자(총장)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재학생 수 (정원 내외)	
	담 당 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	E-mail
	학 제	☐ 일반대학, ☐ 전문대학(산업대학)		
	컨소시엄 기관명	※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작성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반형 운영 대학 () ②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운영 대학 () ※ '24년이 아닌 '25년 운영대학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공고문 본문 참조 ③ '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참여 예정 대학 () ※ '24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25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모집 공고에 참여할 예정인 대학을 말함(기존 운영대학은 ① 혹은 ② 선택)			
_____대학교는 2025년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운영대학 선정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며, 위와 같이 사업 운영대학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대학교 총장 _____ (인)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 귀하				

관련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제외)

연도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비 규모	사업내용 및 실적
2022				
2023				
2024				

* 발주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위탁 기관 또는 부처명 기재

** 사업비 규모 : 위탁받아 실제 지원받은 사업비 규모를 기재(단위: 천원)

*** 사업내용 및 실적 : 실시인원을 포함하여 계량 지표로 기재

【 서식 2 】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작성

1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_____명

○ 종사자 중 전문 취업컨설턴트 현황

성명	직위	자격 및 경력사항(취업지원 유관분야)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초 정보사항 기재하여 별도 제출

2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3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등 첨부

【 서식 3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계획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계획서(요약본)

※ 사업계획서 요약본은 최대 2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음

항목		내용
진로·취업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	인력	(맑은고딕, 글자크기 10, 줄간격 120, 장평 90, 자간 -5, 문단위 4, 문단아래 0)
	시설	
	기존 사업 성과	
	산학협력 체계	
서비스 제공 계획	진로탐색 상담계획	
	포트폴리 오 등 수행계획	
	취업활동 계획서 수립지원	
	자체프로 그램 운영계획	
	사후관리	
참여학교 모집·홍보계획		
기타(필요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계획서

-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증빙 서류 첨부
- ※ 목차 항목별 세부사항은 공고 본문의 선정기준(7~8p)을 참고하여 작성, 목차 항목을 준수 하되 추가적인 목차는 작성 가능
- ※ 분량 최대 40페이지(요약본 및 별지 포함), 별지작성 및 서식 변경 가능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조직도 등)은 작성하지 않으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로 제출

1 진로·취업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30)

1-1 인력 채용 및 활용 계획(10)

- ※ 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 및 신규채용 인력 등의 활용 방안,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계획, 직원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직원의 상담·전산 활용 역량 강화 방안 등 기재

①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배치 계획(5)

② 인력 활용 및 역량강화 방안(5)

1-2 산학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성과(15)

- ※ 인근 기업 및 고교 등과 산학협력 체계 구축 여부,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과 등 기재,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경우에는 인근 고교 대상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성과 포함 기재

1-3 기존 사업 성과(5)

○ 유사 정부 지원사업 수행 역량(5)

- ※ 기존·유사 취업지원 사업 역량을 통해 향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제시

2 서비스 제공 계획(55)

2-1 직업·진로탐색 및 상담 계획(15)

- ※ 고교생 대상 직업진로 탐색 및 상담(기초, 1:1심층), 포트폴리오 수행 계획 등 작성

②-2 취업활동계획서 수립 지원 계획(10)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서 수립 관리 방안 등 작성

②-3 직업훈련 및 일경험 연계 방안(15)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도제학교,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일반고특화훈련) 연계방안 반드시 포함

②-4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기존 프로그램 연계 계획(10)

※ 기업현장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집단상담 및 취업스킬 향상 프로그램(모의면접·피드백, 이력서클리닉), 취업정보제공(구인기업정보제공, 채용박람회 연계 등) 계획 등 기재

②-5 사후관리 추진 계획(5)

※ 서비스 참여학생이 직업 훈련 및 졸업후 미취업시 서비스 제공방안 작성

③ 모집 및 홍보계획(15)

③-1 참여학교(생) 모집 계획(10)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참여학교(도제학교,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일반고특화훈련), 인근 직업계고 등을 대상으로 모집(기존 인프라 활용 등 작성)

③-2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계획(5)

④ 연간 추진 일정

※ 프로그램의 추진 일정을 가급적 월별 추진계획으로 작성하나, 분기별 작성 가능

【 서식 4 】

예 산 집 행 계 획 서

① 총사업비: 2.8억원 기준으로 작성

② 세부 예산내역

○ 정 부 지원금: _____ 천원

③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총사업비 기준)

(단위: 천원)

항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총 계			
인건비	소계		
프로그램비	소계		
운영경비	소계		